

진실보고를 유인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

- 고정비가 단위당 변동비와 상반관계를 갖는 경우 -

* 이 대 선

논문 초 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와 상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렇게 고정비가 단위당변동비와 상반관계를 갖는 경우 전통적인 공통원가배분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사업부의 진실보고가정을 완화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의 허위보고 문제를 Groves의 유인일치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본고가 제시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은 사업부에 배분되는 공통원가를 당해 사업부의 보고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사업부의 허위보고유인을 제거하였고, 또한 사업부가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허위보고를 한 사업부가 부담하게 하여 사업부의 진실보고를 유인하였다. 본고가 제시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사용하면 기업본부는 사업부의 진실보고에 의하여 전사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동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고, 사업부의 실제업적에 기준한 비교적 공평한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할 수 있다.

I. 서 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부제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기업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부제를 효과있게 운용하려면 사업부제를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관리회계제도가 필요하다. 사업부회계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공통원가 배분 (common cost allocation) 문제이다. 공통원가는 기업의 중앙본부 (이하에서는 기업본부라 칭함)와 같은 하나의 서어비스부문이 여러 사업부에 제공하여 주는 용역 (공통용역)의 원가와 여러 사업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 등의 설비 (공통재화)를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 등을 들 수 있다.(본고에서는 공통용역과 공동재화를 통털어 공통재화로 칭함)

*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음.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경영학연구 제18 권 2호 (1989년 2월)

공통원가를 배분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의 문제와 공평한 사업부업적평가의 문제이다. 전자는 기업전반에 걸쳐 이익을 최대화하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사업부의 실제업적에 의한 업적평가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원가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된 공통원가배분모형은 담합적게임이론 모형 [Shapley (1953), Jensen (1977), Callen (1978), Balachandran과 Ramakrishnan (1981) 등], 선형계획모형 [Kaplan과 Thompson (1971), Harley (1971), Kaplan과 Welam (1974)] 등이 있다. 이들 모형은 실무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통원가배분연구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결국 Thomas (1969, 1974) 와 Eckel (1976) 등은 이론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임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통원가의 배분은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Reece와 Cool (1978), Chin과 Lee (1981), Fremgen과 Lao (1981) 는 기업들이 실제로 공통원가를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무자들이 공통원가를 배분하고 있는 이유를 Bodnar와 Lusk (1977) 는 목표계획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고, Zimmerman (1978) 은 대리인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원가배분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을 완화하여 현실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추상화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제시하여 실무자들이 공통원가를 배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기업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제의 환경요소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인 부담능력법 (ability to bear) 의 외부효과 (externality) 문제, 사후 (ex post) 배분문제,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의 결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자들이 권유하여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추정조업도수준법 (estimated activity level) 이다. 이 방법은 기업본부와 사업부간의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보고하는 추정조업도는 진실된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진실보고가정을 완화하고 기업본부와 사업부간의 정보비대칭을 가정한다면 사업부는 배분되는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추정조업도를 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추정조업도수준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 방법에서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조업도가 공통재화를 사용한 대가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부담능력법의 인과관계결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고정비가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marginally increasing) 상반관계 (trade-off) 를 갖고 있는 경우 추정조업도수준법에서 감안하지 않은 기업본부와 사업부간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의 허위보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제시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원가배분방법은 첫째, 사업부로 하여금 허위가 없는 진실된 보고를 기업본부에 하게 하여, 둘째, 기업본부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며, 셋째, 각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비교적 공평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기업본부가 공통재화의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간의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함수만을 알고, 사업부는 단위당변동비만을 부담하고 공통재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익 [사용자잉여 (user's surplus) : 공통재화사용에 의한 총변동비의 감소] 만을 알아 기업본부와 사업부간에 정보비대칭이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본부는 사업부로 하여금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추정효익을 보고하도록 하여 순효익 (전사업부효익과 고정비의 차액) 을 최대화하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것이다. 이러한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은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진실된 효익을 보고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기업본부가 고정비를 사업부가 보고한 추정효익 (또는 추정조업도) 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면 사업부는 배분되는 고정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익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사업부의 진실보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Groves (1973) 가 개발한 진실보고메카니즘 (truth revealing mechanism) 을 사용한다. 이 메카니즘은 허위보고 유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진실보고유인을 제공하는 유인일치메카니즘 (incentive compatible mechanism) 이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에서는 사업부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총고정비에서 당해 사업부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가 보고한 효익의 합계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이와같이 사업부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당해 사업부가 보고한 정보와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가 효익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을 갖지 않게 된다. 나아가 이 공통원가배분방법은 사업부가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의하여 발생한 다른 사업부의 손실만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손실만큼) 당해 사업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부는 진실된 효익을 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본부는 모든 사업부의 진실된 효익을 보고받게 되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총 VI장으로 구분된다. II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실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담능력법과, 부담능력법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추정조업도수준법의 특성

과 한계점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공통재화의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간에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가 있을 때에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의 함수관계를 검토한다. IV장에서는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진실된 보고를 할 경우 기업본부가 전사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모형을 소개한다. V장에서는 사업부의 허위보고 유인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진실보고메카니즘을 이용한 공통원가배분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제안된 원가배분모형의 특성과 한계점을 검토하며 이 모형을 실무에 적용할 때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절차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전통적인 원가배분방법의 특성 및 한계점

공통원가도 다른 원가와 마찬가지로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다. 대개 변동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부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원가 배분상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변동비를 사업부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분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단위당변동비를 사용하면 공통재화의 투자 및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본부의 비효율이 변동비배분을 통하여 사업부로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Horngren (1982)은 이러한 비효율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정단위당변동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본고에서도 공통재화의 변동비는 공통재화 투자결정에 사용한 추정단위당변동비에 사업부의 사용량을 곱하여 사업부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변동비는 배분상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원가배분의 문제는 고정비배분의 문제이다. 본고가 다루는 공통원가배분의 문제도 공통원가중 고정비의 배분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통원가중 고정비를 공통원가라 칭함)

2.1 부담능력법

Vancil (1979)은 조사대상으로 하였던 미국기업의 60%가 부담능력법 (ability to bear)을 사용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부담능력법은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이나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학자들의 권유를 받지 못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공통재화투

자결정후에 발생한 공통원가가 각 사업부의 총자산, 매출액, 공통원가배분전 이익, 공통원가배분전 비용 등에 기준하여 배분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외부효과(externality)의 문제가 있다. 부담능력법을 사용하면 사업부에 배분되는 공통원가는 당해 사업부의 실적 이외에 다른 사업부의 실적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사업부에 배분되는 원가는 다른 사업부의 실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당해 사업부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공평한 사업부의 업적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이미 발생한 공통원가를 사업부에서 발생한 배분기준과 전사업부에서 발생한 배분기준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에 배분되는 공통원가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 이외의 다른 사업부에서 발생한 배분기준의 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업부에 배분되는 공통원가는 사업부의 실적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업부업적평가를 저해한다.

둘째, 배분된 공통원가와 공통재화사용에 의한 효익간의 인과관계(cause and effect)결여의 문제가 있다. 실무에서 원가배분기준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업부의 총자산, 매출액, 공통원가배분전 비용 또는 공통원가배분전 이익 등은 공통재화의 사용에 의한 사업부의 효익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한 공통원가배분은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왜곡시킬 수 있다.

셋째, 실제발생고정비를 사후(ex post)에 배분하는 문제가 있다. 부담능력법에서는 공통재화투자결정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사업부에 배분하기 때문에 공통원가배분이 공통재화투자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본부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하는 최적이 아닌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투자결정시 발생한 기업본부의 비효율이 원가배분을 통하여 사업부에 이전된다. 이렇게 원가배분에 의하여 이전된 기업본부의 비효율은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저해한다.

2.2 추정조업도수준법

조업도수준법(activity level)은 부담능력법의 인과관계결여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사용되는 조업도는 실제조업도 또는 추정조업도이다. 실제조업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부담능력법에서와 같이 외부효과문제와 사후원가배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Horngren(1982)은 추정조업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추정조업도수준법 (estimated activity level)에 의하여 고정비를 사업부에 배분하는 경우 기업본부는 우선 사업부로 하여금 조업도를 추정하여 보고하게 한다. 그 다음, 기업본부는 보고된 추정조업도를 집계하여 사업부 전체의 조업도에 맞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하고 추정된 고정비를 보고된 사업부의 조업도에 기준하여 배분한다. 실제로 발생한 고정비가 아닌 추정된 고정비를 배분하는 이유는 공통재화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본부의 비효율이 사업부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추정조업도수준법은 배분기준이 공통재화투자결정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공통원가배분이 사전 (ex ante)에 행하여 지기 때문에 부담능력법의 한계점을 상당히 제거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허위보고가능성의 문제이다. 추정조업도수준법은 기업본부와 사업부가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제공하는 추정조업도는 진실된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진실보고의 가정을 완화하고 기업본부와 사업부간에 정보비대칭을 가정한다면 사업부가 추정한 조업도가 정확하다 하여도 진실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추정조업도수준법에서는 고정비가 추정공통재화사용량에 의하여 배분되기 때문에 사업부는 고정비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진실된 추정사용량 보다 적은 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허위보고유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업부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된 정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사업부가 허위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가 보고한 추정조업도에 의한 투자결정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투자결정이 아닐 수 있다.

둘째, 부담능력법에서 거론한 인과관계 (cause and effect) 결여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지 못한다. 추정조업도수준법에서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공통재화사용량은 공통재화를 사용하여 얻는 효익과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완전 인과관계에 의한 공통원가배분이 아닐 수 있다. 두 사업부의 공통재화에 대한 수요함수가 서로 다른 경우 이들 사업부가 동일량의 공통재화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들 사업부의 공통재화사용효익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공통재화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비를 배분한다면 배분된 고정비는 공통재화를 사용하여 발생한 효익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결여된 공통원가의 배분은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왜곡시킨다.

Ⅲ . 공통원가의 행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여 조업도가 무한대로 될 수 있는 기업을 가정하고 총원가와 조업도의 관계를 분석하면 모든 원가는 장기적으로 고정비로 분류된다. 즉, 고정비를 무한대로 투자하여 조업도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변동비는 0 (영)이 된다.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원가의 고정-변동의 분류는 이러한 장기적인 원가함수의 일부, 즉 원가형태의 단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조업도와 원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공통원가도 다른 원가와 같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기나 복사기와 같은 사무기기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전형적인 공통원가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사무기기의 취득원가는 고정비로 분류되고, 이들 사무기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변동비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되는 공통원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태를 갖게 된다.

3.1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의 상반관계

일반적으로 공통원가의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간에 상반관계 (trade-off)가 존재한다. 즉, 고정비의 증가는 단위당변동비를 감소시킨다. 예를 들면, 효율적인 사무기기의 취득원가는 비효율적인 사무기기의 취득원가보다 높으나 보다 낮은 단위당변동비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사무기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고정비는 증가하지만 단위당변동비는 감소한다.

3.2 단위당변동비에 대한 고정비의 한계적 증가관계

일정액의 단위당변동비를 감소시킬 때 증가되는 고정비가 일정하나 또는 일정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대개의 경우 단위당변동비가 아주 큰 경우 일정액의 단위당변동비의 감소를 위한 고정비의 증가는 한계적 감소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단위당변동비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하회하면 일정액의 단위당변동비의 감소에 따른 고정비의 증가는 한계적 증가함수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원가행태는 단위당변동비가 0 (영)에 접근할 경우 더욱 더 확실하여 진다. 즉, 단위당변동비가 0 (영)에 가까운 경우 일정액의 단위당변동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가 0 (영)보다 훨씬 큰 경우에 동일액의 단위당변동비를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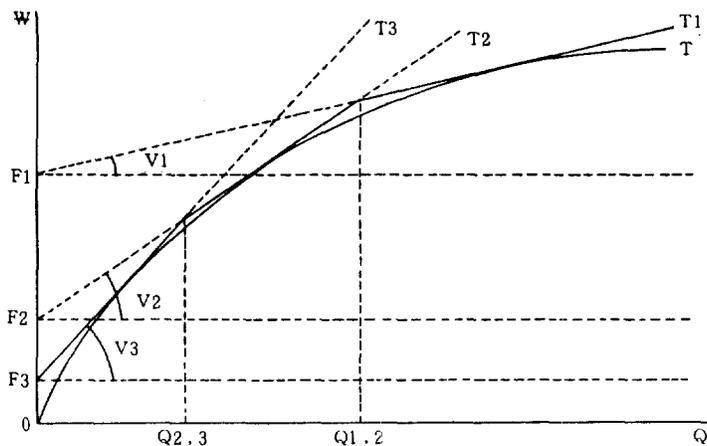
소시키기 위한 고정비보다 상당히 클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에 있느냐 또는 한계적으로 감소하는 상반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은 각 회사별로 또는 각 공통재화별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정비가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기업이 고정비 투자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고정비의 투자범주내에서는 고정비가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고정비 투자결정이 고정비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고정비의 규모가 작은 것부터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고정비의 투자결정문제는 고정비투자여부가 아니고 고정비투자수준이다. 의사결정모형을 필요로 하는 고정비투자수준은 상당수준이 되어 한계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의 관계를 갖는 고정비의 범주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고려하는 고정비투자범주내에서는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는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액의 단위당변동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가 감소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한계적 증가함수의 가정을 완화하여도 본고의 결과는 변함이 없음)

이와같이 고정비 (F) 와 단위당변동비 (V) 간에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총원가 (T) 의 행태는 <그림 1>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그림 1> 공통원가행태

고정비 (F) 가 단위당변동비 (V) 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갖는 경우



<그림 1>의 T1, T2와 T3는 고정비 F1, F2와 F3에 상응하는 단위당변동비가 V1, V2와 V3 일때 공통재화를 Q만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원가를 표시한다. 특히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와의 한계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단위당변동비는 일정금액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첫째, <그림 1>은 높은 고정비일수록 낮은 단위당변동비를 발생시키는 다음과 같은 상반관계를 보여준다.

$$F1 > F2 > F3 \text{ 이면, } V1 < V2 < V3 \dots\dots\dots (1)$$

둘째, <그림 1>은 일정금액의 단위당변동비를 감소시키는 데에 필요한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증가되어 다음과 같이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 증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V3 > V2 > V1 \text{ 이고, } V3 - V2 = V2 - V1 \text{ 이면,} \\ F2 - F3 < F1 - F2 \dots\dots\dots (2)$$

위의 <그림 1>에서 Q1,2는 T1과 T2를 동일하게 하는 공통재화사용량을, Q2,3는 T2와 T3를 동일하게 하는 사용량을 표시한다. 만일 공통재화사용량이 Q2,3보다 적으면 T3이, 사용량이 Q2,3보다 많으나 Q1,2보다 적으면 T2가, 그리고 사용량이 Q1,2보다 많으면 T1이 최소이다. 따라서, 기업이 총원가를 최소화하려면 사용량이 Q2,3보다 적으면 F3을, 사용량이 Q2,3보다 많으나, Q1,2보다 적으면 F2를, 그리고 사용량이 Q1,2보다 많으면 F1을 투자하여야 한다. 위의 예는 고정비의 투자를 3개의 수준에 국한시켰을 때를 예시한 것이다. 고정비의 투자수준을 무한대로 세분화하면 총원가를 최소로 하는 고정비투자에 따른 총원가는 <그림 1>의 볼록곡선(T)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표시된 총원가의 단위당변동비는 볼록곡선에 접하는 선의 기울기로 나타나고 고정비는 이 접선의 종축절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의 상반관계를 나타낸 식(1)과 한계적 감소관계를 나타낸 식(2)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다.

$$F'(V) < 0 \dots\dots\dots (3)$$

$$F''(V) > 0 \dots\dots\dots (4)$$

위의 식(3)은 고정비투자가 증가할수록 단위당변동비는 감소한다는 이들 두 원가의

상반관계, 즉 식(1)을 일반화한 것이다. 식(4)는 일정한 금액의 단위당변동비의 감소를 위한 고정비는 단위당변동비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는 이들 두 원가의 한계적 증가관계, 즉 식(2)를 일반화한 것이다.

Ⅵ.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모형

분권화된 사업부제를 도입하여 운용할 때에 거론되는 최적투자결정의 문제는 사업부의 의사결정이 기업전반에 걸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업부가 공통재화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기업전체의 차원에서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기업전반에 걸친 이익이 사업부가 개별적으로 투자결정을 하였을 때의 사업부의 이익의 합계보다 크기 때문이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은 기업본부가 사업부의 협조를 얻어 단독으로 행하거나 또는 사업부들의 자율적인 담합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투자결정모형은 전자의 방법이다.

기업본부가 사업부의 협조를 얻어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하는 이유는 사업부는 공통재화 사용과 같이 일상적인 사업부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기업본부는 공통재화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같이 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등 부서간의 정보전문화에 의한 정보비대칭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본부가 정보비대칭의 위치에 있고, 사업부의 보고가 당해 사업부의 업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부는 허위보고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 장에서는 우선 고정비가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가질 때 공통재화투자결정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보고하는 정보는 진실된 ($t=true$)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다음 장에서는 진실보고의 가정을 완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업부의 허위보고유인을 제거하고 사업부에게 진실보고유인을 제공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제시한다.

4.1 사용자잉여

기업본부가 공통원가중 고정비를 투자하고 사업부는 변동비만을 부담하고 공통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각 사업부는 공통재화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한계적효익이 단위당변동비와 같을 때까지 공통재화를 사용할 것이다. 다음의

식(5)는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 i의 공통재화수요를 나타낸다.

$$Q_i = f(V) \dots\dots\dots (5)$$

단, $V > 0$, $Q_i > 0$, $f'(V) < 0$, $V = a$ = 양의 상수일때 $Q_i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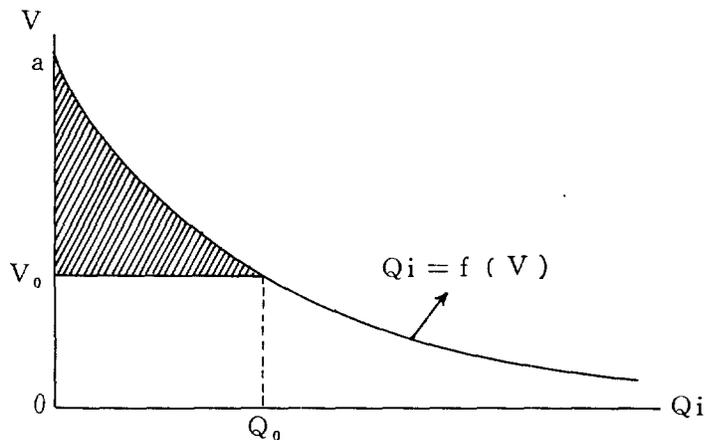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편의상 사업부 i의 공통재화수요와 단위당변동비의 관계에 있어서 식(5)의 단서에서와 같이 공통재화수요를 0(영)으로 하는 일정 단위당변동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사업부 i가 단위당변동비 V_0 를 지불하고 공통재화를 Q_0 만큼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부의 진실된 사용자잉여(user's surplus)는 공통재화를 Q_0 만큼 사용하여 발생하는 총효익 즉, 총변동비의 감소분이 될 것이다. 이때의 진실된 사용자잉여[$St\ i(V_0)$]는 식(6)으로 표시될 수 있다.

$$St\ i(V_0) = \int_{V_0}^a Q_i(V) dV \dots\dots\dots (6)$$

<그림 2>의 $Q_i = f(V)$ 곡선은 사업부 i의 공통재화수요함수가 식(5)의 단서와 같이 단위당변동비에 대한 감소함수임을 보여주고 이선의 종축절편은 단위당변동비가 a일때 사업부 i의 공통재화의 수요가 0(영)임을 보여준다. <그림 2>의 빗줄친 부분은 사업부 i가 단위당변동비 V_0 를 지불하고 공통재화를 Q_0 만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잉여 $St\ i(V_0)$ 를 나타낸다. 이는 사업부 i가 공통재화를 Q_0 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총효익 즉 총변동비의 감소분을 나타낸다.

<그림 2> 사업부 i의 단위당변동비와 공통재화사용량 및 사용자잉여의 관계



식(5)의 가정에서 V 와 $Q_i > 0$ 이고 $f'(V) < 0$ 이기 때문에 식(6)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St_i'(V) < 0 \dots\dots\dots (7)$$

$$St_i''(V) > 0 \dots\dots\dots (8)$$

기업이 다수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부가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의 사용자잉여를 기업본부에 진실로 보고한다면 기업본부는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 전체의 사용자잉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n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의 진실된 총 사용자잉여 $[St(V)]$ 는 식(9)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t(V) = \sum_{i=1}^n St_i(V) \dots\dots\dots (9)$$

이렇게 총 사용자잉여는 식(5)와 같은 사업부의 수요함수에 따른 사업부 사용자잉여의 단순합계이기 때문에 사업부의 사용자잉여가 갖는 특성인 식(7)과 (8)을 계속 유지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St'(V) < 0 \dots\dots\dots (10)$$

$$St''(V) > 0 \dots\dots\dots (11)$$

4.2 고정비투자결정

위의 사용자잉여는 사업부가 부담하여야 할 단위당변동비만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기업본부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하려면 기업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공통재화의 고정비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본부의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은 다음의 식(12)와 같이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모든 사업부의 사용자잉여와 당해 단위당변동비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고정비의 차이 즉 순효익 (net benefit) $[\pi t(V)]$ 을 극대화하는 단위당변동비 (V)를 찾는 것이다.

$$\text{Maximize } \pi t(V) = \sum_{i=1}^n St_i(V) - F(V) \dots\dots\dots (12)$$

$$\text{Subject to : } Q(V) < \sum_{i=1}^n Q_t i(V)$$

이 목표함수의 제약조건은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의 공통재화사용량의 합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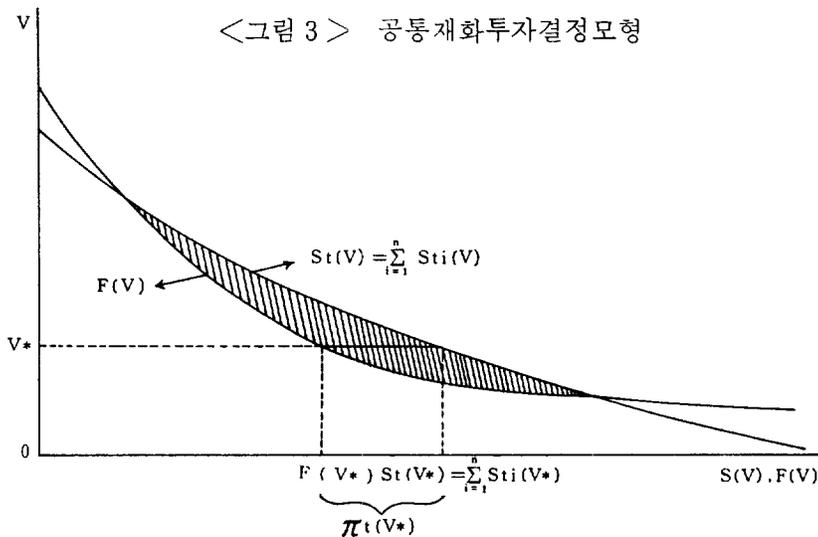
당해 단위당변동비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고정비의 투자로 가능한 공통재화의 사용량 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림 3>은 기업이 n개의 사업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를 예로 하여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의 진실된 사용자잉여를 합한 $\sum_{i=1}^n St_i(V)$ 로 기업전체의 총 사용자잉여 [$St(V)$]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3>의 F선은 식(3)과 같이 단위당변동비와 상반관계가 있으며 식(4)와 같이 한계적증가관계를 갖는 고정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전체의 진실된 총 사용자잉여를 나타내는 $\sum_{i=1}^n St_i(V)$ 선이 단위당변동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특성,식(10)과 (11)은 고정비를 나타내는 F선이 단위당변동비에 대하여 갖고 있는 특성,식(3)과 식(4)와 같다. 즉 두선이 공히 단위당변동비와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갖는 연속함수인 것이다.

<그림 3>에서는 $St(V)$ 선과 $F(V)$ 선이 이들의 특성을 유지하며 두선이 교차하는 특수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 양극에서 순효익이 최대가 되는 경우 (corner solutions)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양극에서 얻어지는 해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의 논리에 어긋난다. 그외의 경우에는 이 두선의 특성을 유지하고 식(12)의 목표함수에 의하여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하는 한 본고의 결과는 변함이 없다.

<그림 3>의 빗줄친 부분은 모든 사업부가 진실된 보고를 하였을 경우 기업본부의 공통재화투자에 의하여 기업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순효익 [$\pi_t(V)$]을 나타낸다. 순효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단위당변동비는 V^* 로 나타나 있으며 고정비는 $F(V^*)$ 로 나타나 있다. 이때의 기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순효익은 $\pi_t(V^*)$ 이다.



V. 진실보고를 유인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

전장에서 제시한 최적공통재화투자결정모형은 사업부가 진실을 보고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진실보고가정을 완화한다. 기업본부가 공통재화의 고정비를 사업부가 보고하는 사용자잉여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면 사업부는 배분되는 고정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진실된 사용자잉여보다 적은 사용자잉여를 허위로 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만일 사업부가 허위보고를 한다면 허위보고에 기준한 공통재화투자결정은 전사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이 아닐 수 있다.

5.1 진실보고메카니즘의 개요

진실보고메카니즘 (truth revealing mechanism)은 보고자의 보고내용과 보고유인을 일치시켜주는 메카니즘이기 때문에 유인일치메카니즘 (incentive compatible mechanism)이라고도 한다. 이 메카니즘은 원래 공공재 (public goods)의 투자 및 가격결정에서 제기되는 공공재 투자결정자와 이용자간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허위보고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공공재의 투자와 가격은 사용자의 수요와 이에 따른 효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재의 특성상 사용자의 수요와 효익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허위보고유인을 제거하고 진실보고유인을 제공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허위보고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larke(1971,1972), Groves와 Loeb(1975), 그리고 Tideman과 Tullock(1976)에 의하여 착안-설명된 것이 진실보고메카니즘이다. 이렇게 공공재의 투자 및 가격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메카니즘을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허위보고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은 Groves(1973)와 Groves와 Loeb(1979)이다. 이들은 기업이 이미 취득한 공통재화를 여러 사업부에서 사용하려 할 때 공통재화배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메카니즘을 사용하였다.

Mumy(1981)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지분이 혼합되어 소유가 불분명할 때 혼합된 지분의 배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배분되어야 할 지분의 총액만을 알고 각 지분소유자들은 자기의 지분만을 알고 있어 배분담당자와 지분소유자간에 정보비대칭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진실보고메카니즘의 기본개념을 설명하였다. 이 예에서 Mumy는 배분담당자가 지분소유자에 지불하는 금액은 총지분금액에서 다른 지분소유자가 보고한 지분의 합계를 차감한 것으로 함으로써 지분소유자의 보상이 당해 지분소유자의 보고내용과

하등의 관계가 없게 하여 지분소유자의 허위보고유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Mummy는 만일 지분소유자가 허위보고를 하여 다른 지분소유자가 손해를 보면 허위보고를 한 지분소유자가 허위금액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벌칙을 두어 지분소유자가 진실된 지분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진실보고메카니즘의 기본개념은 이해관계자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할 경우 어느 한 이해관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그가 보고한 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허위보고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메카니즘은 어느 한 이해관계자의 허위보고에 의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손해를 허위보고한 이해관계자가 부담하게 하여 이해관계자의 진실보고를 유도한다. 따라서 이 메카니즘을 적용할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기의 보상이 자기가 보고하는 정보와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보고할 유인을 갖지 않게 되고, 허위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진실보고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진실보고메카니즘을 응용하여 공동원가배분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보고의 문제를 해결한다.

5.2 진실보고공동원가배분방법

기업이 n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자. 기업본부는 우선 사업부가 단위당변동비만을 지불하고 공동재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자잉여를 기업본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부 i 가 기업본부에 보고한 ($r = \text{reported}$)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용자잉여를 진실된 ($t = \text{true}$) 사용자잉여 [$S_t i (V)$]와 구분하기 위하여 [$S_r i (V)$]라 한다.

기업본부는 사업부가 보고한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용자잉여와 고정비를 비교하여 다음의 목표함수에 의하여 순효익이 최대가 되는 투자결정을 한다.

$$\text{Maximize } \pi (V) = \sum_{i=1}^n S_r i (V) - F (V) \dots\dots\dots (13)$$

$$\text{Subject to : } Q (V) > \sum_{i=1}^n Q_r i (V)$$

식(13)과 식(12)의 차이는 전자는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자잉여와 사용량을 사용한 것이고 후자는 사업부의 진실된 사용자잉여와 사용량을 사용한 것이다.

기업본부는 식(13)에 의한 공동재화투자결정이 어떠한 단위당변동비에서 이루어지든지

다음의 식(14)와 같이 고정비를 사업부 i 에 배분한다. 고정비를 이렇게 각 사업부에 배분하면 모든 사업부의 진실보고를 유도할 수 있다.

$$AF_i(V) = F(V) - \sum_{j \neq i}^n Sr_j(V) \quad j = 1, \dots, n \quad (14)$$

사업부 i 에 배분하여야 하는 고정비 [$AF_i(V)$]는 단위당변동비 V에 따른 총 고정비에서 사업부 i 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자잉여 [$\sum_{j \neq i} Sr_j(V)$] 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고정비를 배분한 후 사업부 i 의 순효익 [$\pi_i(V)$]은 단위당변동비 V에 따른 진실된 사업부의 사용자잉여 [$St_i(V)$]에서 배분된 고정비 [$AF_i(V)$] 를 차감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i_i(V) = St_i(V) - AF_i(V) \quad (15)$$

식(15)에 식(14)를 대입하면

$$\pi_i(V) = St_i(V) - [F(V) - \sum_{j \neq i}^n Sr_j(V)] \quad (16)$$

식(16)을 재나열하면

$$\pi_i(V) = [St_i(V) + \sum_{j \neq i}^n Sr_j(V)] - F(V) \quad (17)$$

식(17)은 사업부 i 의 순효익은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 i 의 진실된 사용자잉여와 사업부 i 이외의 다른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자잉여의 합에서 고정비를 차감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업부 i 가 허위보고를 한다고 하여도 사업부 i 의 순효익은 사업부 i 의 진실된 사용자잉여, 다른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자잉여, 그리고 고정비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여준다.

5.3 배분방법의 특성

상기 공동원가배분방법을 사용할 경우 모든 사업부는 허위보고유인⁹ 갖지 않고 진실보고유인을 갖게 된다. [Groves(1973)는 위의 식(13)과 같은 목표함수에 의하여 공동회계투자결정을 하고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식(17)과 같이 결정되는 순효익을 최대화하려 할 때에 사업부의 보고내용과 보고유인이 일치됨을 증명하였다. 본고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상기 공동원가배분방법에 의하면 사업부의 보고내용과 보고유인이 일치됨을 설

명한다.] 이 방법은 이렇게 사업부의 보고내용과 보고유인을 일치시키지만 미배분고정비의 발생,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발생된 고정비전액을 공통재화를 사용한 사업부에 배분하는 전통적인 공통원가배분방법과 괴리가 있다.

5.3.1 허위보고유인의 제거

위의 방법에 의하여 고정비를 사업부에 배분한다면 사업부 i 의 순효익은 식(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부 i 가 보고한 사용자잉여와 하등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사업부 i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부 각각에 적용되어 모든 사업부는 허위보고를 할 유인을 갖지 않게 된다.

식(18)의 단서는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업부가 보고한 공통재화사용량의 합이 기업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재화사용량보다 적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표시하고 있다. 식(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사업부의 고정비배분후 순효익은 당해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사업부는 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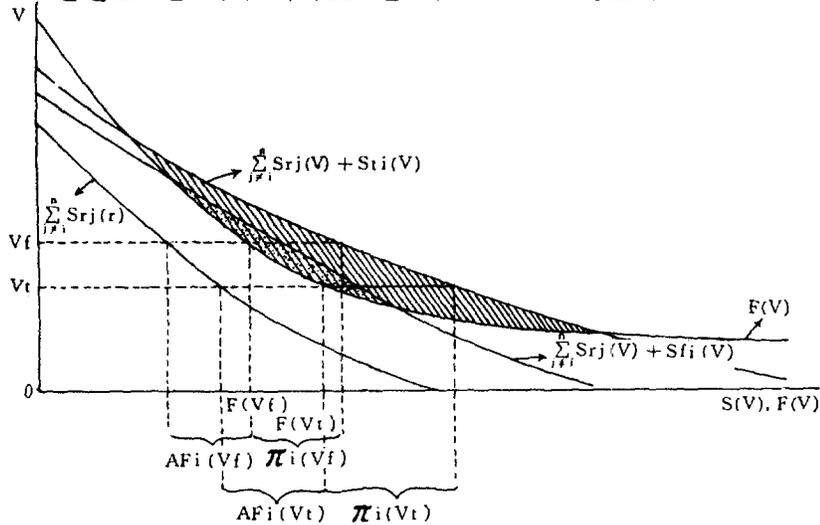
5.3.2 진실보고유인의 제공

모든 사업부는 식(17)과 같이 계산되는 순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용자잉여를 기업본부에 보고할 것이다. 우선 사업부 i 가 진실보고를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업본부에 보고된 모든 사업부의 사용자잉여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사업부 i 이외의 다른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자잉여 $[\sum_{j \neq i}^n S_j(V)]$ 와 사업부 i 의 진실된 사용자잉여 $[S_{t_i}(V)]$ 의 합계가 된다. 따라서 $\sum_{j \neq i}^n S_r j(V)$ 선과 $\sum_{j \neq i}^n S_r j(V) + S_{t_i}(V)$ 선의 사이는 사업부 i 의 진실된 사용자잉여 $[S_{t_i}(V)]$ 를 나타낸다. 기업본부는 보고된 모든 사업부의 사용자잉여 $[\sum_{j \neq i}^n S_r j(V) + S_{t_i}(V)]$ 와 고정비 $[F(V)]$ 의 사이, 즉 <그림 4>의 빗줄친 부분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것이다. 이 때의 단위당변동비와 고정비를 <그림 4>에서는 각각 V_t 와 $F(V_t)$ 로 표시하였다. 식(14)에 의하여 고정비를 배분한다면 이 때에 사업부 i 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AF_i(V_t)$ 이며 고정비배분후 순효익은 $\pi_i(V_t)$ 이다.

사업부 i 가 허위 ($f = \text{false}$) 보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다. 이러한 경우 사업부 i 의 허위보고가 기업본부의 공통재화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미칠 수도 있다. 여기서 공통재화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함은 기업본부가 사업부 i 가 진실보고를 할 때와 다른 투자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다.

<그림 4> 사업부의 진실보고유인

진실보고할 때와 허위보고할 때의 사업부 순효익의 비교



우선 사업부 i 의 허위보고가 기업본부의 공통재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부 i 가 제반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진실된 사용자잉여에서 일정 금액의 사용자잉여를 일괄적으로 차감 (또는 가산 -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생각하여 볼 수 있겠으나, 배분되는 고정비를 감소하려는 사업부의 보고유인에 어긋난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고의 결과는 변함이 없다.) 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식(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때의 사업부 i 의 순효익은 허위보고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사업부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사업부 i 가 진실보고를 할 때보다 증가되어 (가산하는 경우에는 감소되어) 다른 사업부의 순효익을 줄여주는 (가산하는 경우에는 늘여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업부 i 가 허위보고를 하여 기업본부의 공통재투자결정이 사업부 i 가 진실된 보고를 할 때와 다른 단위당변동비에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림 4>에서 $\sum_{j=1}^n Srj(V) + Sf i(V)$ 선은 사업부 i 가 허위보고를 할 때 기업본부에 보고된 모든 사업부의 사용자잉여를 나타낸다. 기업본부는 <그림 4>에서 점친 부분 즉 $\sum_{j=1}^n Srj(V) + Sf i(V)$ 선과 $F(V)$ 선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투자결정을 할 것이다.

<그림 4>에서는 이 차이를 최대화하는 단위당변동비와 고정비를 각각 V_f 와 $F(V_f)$ 라 하였다. 이 경우 사업부 i 의 고정비배분후 순효익은 진실된 사업부 i 의 사용자잉여 $St i(V_f)$ 에서 사업부 i 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AF i(V_f)$ 를 차감한 $\pi i(V_f)$ 이다. 이 순효익 [$\pi i(V_f)$]은 사업부 i 가 진실보고를 하였을 때 공통재투자결정이

단위당변동비가 V_f 고정비가 $F(V_f)$ 에서 이루어져 발생하는 사업부 i 의 순효익과 같다. 사업부 i 가 진실보고를 한 경우 단위당변동비와 고정비가 각각 V_t 와 $F(V_t)$ 일 때 사업부 i 의 순효익이 최대화하기 때문에 $\pi_i(V_t)$ 는 $\pi_i(V_f)$ 보다 크다.

이와 같이 사업부 i 의 허위보고가 공동재화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업부 i 의 고정비배분후 순효익은 사업부 i 가 진실보고를 할 때의 고정비배분후 순효익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부 i 는 진실보고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사업부 i 가 허위보고를 하여 발생하는 순효익감소의 폭은 사업부 i 가 허위보고를 한 대가로 부담하여야 할 벌금이다. 이 벌금은 사업부 i 의 허위보고에 의하여 공동재화투자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 나아가서는 기업이 감수하여야 하는 순효익의 감소분이다.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은 사업부 i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부는 진실된 사용자잉여를 보고하게 된다.

각 사업부가 진실된 사용자잉여를 보고한다는 것은 진실된 공동재화사용량을 보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식(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부의 사용자잉여는 사용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위에서의와 같이 모든 사업부가 사용자잉여를 진실로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을 갖는다면 사용량도 진실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보고한 사용량이 사업부의 순효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사업부가 진실이 아닌 사용량을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본부는 사업부가 보고한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용자잉여와 사용량이 식(6)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본부의 분석은 사업부로 하여금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용량을 진실로 보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부가 진실보고유인을 갖고 있어 사업부가 진실보고를 하게 된다면 기업본부의 공동재화투자결정목표함수인 식(13)은 사업부가 진실보고를 할 경우의 목표함수인 식(12)와 같아진다. 환언하면 기업본부가 식(14)와 같이 고정비를 사업부에 배분하면 기업본부는 사업부의 진실된 사용자잉여를 사용하여 순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동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전반에 걸친 순효익은 단위당변동비가 V^* 그리고 고정비가 $F(V^*)$ 일 때 최대가 될 것이다. 이 때에 사업부 i 이외의 사업부가 보고한 사용자잉여는 진실된 사용자잉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식(17)에 적용하면 사업부 i 의 순효익은 다음의 식(18)과 같다.

$$\pi_i(V^*) = [St_i(V^*) + \sum_{j \neq i}^n St_j(V^*)] - F(V^*) \dots\dots\dots (18)$$

식(18)의 $St_i(V^*)$ 와 $\sum_{j \neq i}^n St_j(V^*)$ 의 합은 모든 사업부의 진실된 사용자잉여의 합

계 $\left[\sum_{i=1}^n St\ i(V^*) \right]$ 가 되어 식(18)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pi_i(V^*) = \sum_{i=1}^n St\ i(V^*) - F(V^*) \dots\dots\dots (19)$$

식(19)에 식(12)를 대입하면

$$\pi_i(V^*) = \pi_t(V^*) \dots\dots\dots (20)$$

식(20)은 사업부 i 이외의 다른 사업부가 진실보고를 하였을 경우 식(14)에 의하여 고정비를 배분한 후 사업부 i의 순효익 $[\pi_i(V^*)]$ 은 기업본부가 단위당변동비 V^* 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고정비 $F(V^*)$ 를 투자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기업전반에 걸친 순효익 $\pi_t(V^*)$ 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부 i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 모두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업부순효익은 기업전반에 걸친 순효익이 된다.

5.3.3 비교적 공평한 업적평가

상기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사용하면 각 사업부의 순효익은 식(2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순효익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재화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기업전체에 어느 정도의 순효익을 제공하였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각 사업부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식(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사업부의 사용자잉여에서 순효익을 차감한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자잉여의 비율에 의한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준의 인과관계에 의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높은 공통원가배분방법은 사업부의 실제 업적에 의한 공평한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5.3.4 미배분고정비

식(14)에 의하여 공통원가를 사업부에 배분하면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진실된 사용자잉여를 보고하게 되어 기업본부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부에 배분된 고정비의 합계는 식(21)로 표현된다.

$$\sum_{i=1}^n AF\ i(V^*) = nF(V^*) - (n-1) St(V^*) \dots\dots\dots (21)$$

그러므로 배분된 고정비와 총 고정비는 차이(D)는 다음과 같다.

$$D = (n-1) \pi_t(V^*) \dots\dots\dots (22)$$

이 차이는 위의 식(22)에 나타나 있듯이 사업부의 수와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순효익과 증가함수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유인일치메카니즘에서 나타나는 잉여 (surplus) 이다. 일반적으로 유인일치메카니즘에서는 이 차이를 배분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통원가배분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기업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미배분고정비가 있다는 것은 고정비 전액을 배분하는 전통적인 공통원가배분관습과는 어긋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는 수개에 지나지 않고 또한 순효익은 배분되어야 할 총 고정비에 비교한다면 소액일 것이므로 기업본부가 부담하는 미배분고정비는 소액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미배분고정비를 기업본부의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공통원가배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3.5 보조금의 지급

위에서 제시한 식(14)에 의하여 고정비를 배분하는 경우 사업부 i 의 공통재화수요가 작고 다른 사업부의 수요가 커서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다른 사업부의 사용자잉여의 총계 $\left[\sum_{j \neq i}^n St_j(V) \right]$ 가 고정비 $F(V)$ 보다 클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원가 배분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본부가 사업부 i 에 고정비를 배분하는 대신 보조금 (subsidy) 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보조금의 규모는 $\sum_{j \neq i}^n St_j(V^*)$ 와 $F(V^*)$ 의 차이이며 사업부 i 의 순효익이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순효익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금액 즉 $\pi t(V^*)$ 와 $St_i(V^*)$ 의 차이이다.

대개의 경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는 수개에 지나지 않으며 공통재화투자결정문제는 공통재화에 대한 각 사업부의 수요가 상당 수준일 경우에 제기된다. 공통재화에 대한 수요가 소규모인 사업부가 있다면 그 사업부가 공통재화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기업본부는 그 사업부를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본부가 장부상으로 사업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5.4 실무적용절차

사업부가 진실보고를 하게 하여 기업본부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통원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각 사업부에 배분되어야 한다.

- 1 단계 : 기업본부는 여러 수준의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고정비와 공통재화의 사용가능량을 파악한다.
- 2 단계 : 기업본부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사업부에 미리 알려주어 사업부가 진실된 보고를 하게 한다.
- 3 단계 : 사업부로 하여금 1 단계에서 파악된 각 단위당변동비만을 부담하고 공통재화를 사용할 경우 공통재화사용량과 지급할 수 있는 공통재화의 대가를 기업본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부는 공통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효익만큼 지불할 것이므로 사업부가 보고하는 공통재화의 대가는 단위당변동비만을 지불하고 공통재화를 사용하여 절감할 수 있는 총 변동비 즉 사용자잉여이다.
- 4 단계 : 기업본부는 3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우선 사업부가 보고한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공통재화사용량과 사용자잉여가 식(6)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 식(13)에 의하여 기업전체의 순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한다.
- 5 단계 : 기업본부는 식(14)에 의하여 공통원가를 사업부에 배분한다.

Ⅵ. 결 론

학자들의 공통원가배분 무용지물설을 무시한 채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제로 공통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실무에서 공통원가배분이 실시되는 이유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원가배분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을 완화하여 실제 사업부제의 환경요소를 원가배분모형에 도입하여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담능력법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자들은 추정조업도수준법을 권장한다. 추정조업도수준법에는 사업부의 진실보고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추정조업도수준법을 사용하면 사업부는 배분되는 공통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허위보고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사업부의 허위보고를 사용한 기업본부의 공통재화투자결정은 전사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본고는 사업부가 기업본부에 진실된 효익을 보고하게 하여 기업본부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순효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통재화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진실보고공통원가

배분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각 사업부의 공통원가배분후 순효익은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순효익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재화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기업전체에 어느 정도의 순효익을 제공하였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사업부에 배분되는 고정비는 사업부의 총효익에서 순효익을 차감한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준의 인과관계에 의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이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높은 공통원가배분방법은 비교적 공평한 사업부의 업적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전통적인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사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허위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통원가의 행태, 기업본부와 사업부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본고가 제시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의 유용성은 이들 가정과 현실과의 상응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와의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상반관계를 기업본부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러 사업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산기나 복사기와 같은 사무기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의 함수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무기기들이 다양하여 이들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의 함수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본부와 같이 시장에서 일괄 구입할 수 없는 공통재화의 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 이들의 함수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통원가를 장기적으로 고정-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모색하여 고정비와 단위당변동비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업부들이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공통재화의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용자잉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사업부들이 사무기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경우에도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사용자잉여의 계산은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는 사업부가 단위당변동비만을 부담하고 공통재화를 사용할 때 사업부가 공통재화사용대가로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기업본부가 입찰방식에 의하여 획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입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부는 단위당변동비에 상응하는 공통재화의 사용량을 단위당변동비에 따른 총효익 즉 사용자잉여의 도출변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업부의 허위보고문제가 주관심사이었기 때문에 주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업본부와 사업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완벽하고, 투자결정에 사용하는 변수는 사용자잉여와 고정비만이고, 그리고 각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였

다. 조직구성원의 유인 및 위험선호도,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비계량적요소를 공통재화투자결정모형에 도입하고 사업부의 담합 또는 부서간의 정보의 누출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더 상응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공통원가의 행태와 사업부제의 환경요소를 추상화한 모형내에서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부의 진실보고를 유인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본고의 공통원가배분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현실을 추상화하기 위한 가정상의 한계점 이외에 전통적으로 고정비 전액을 배분하는 원가배분관습을 벗어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미배분원가의 처리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공통원가배분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이 방법의 한계점과 이 방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한 원가-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을 본고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공통원가배분방법과 전통적인 공통원가배분방법의 원가와 편익을 구체적으로 계수화하여 실증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앞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증연구는 본고가 제시하는 공통원가배분방법의 실무적용타당성 여부를 제시하여 줄 것이다.

진실보고메카니즘은 원래 공공재의 가격 및 투자결정시에 발생하는 공공재사용자와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허위보고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기업을 경영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중 공공재의 가격 및 투자결정문제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허위보고유인문제는 기업이 성장하여 대형화되고 기업경영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경영시 발생할 수 있는 허위보고유인문제를 해결한 연구는 아직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는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기업경영상 정보비대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공통원가배분시 발생 가능한 허위보고유인의 문제를 진실보고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參 考 文 獻

- Balachandran, B. and R. Ramakrishnan, "Joint Cost Allocation: A Unified Approach," Accounting Review (January 1981), pp. 85-96.
- Bodnar, G. and E.J. Lusk, "Motivational Considerations in Cost Allocation Systems: A Conditioning Theory Approach,"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7), pp.857-68.
- Callen, J., "Financial Cost Allocation: A Game Theoretic Approach," Accounting Review (April 1978), pp.303-308.
- Chin, J.S. and Y. Lee, "A Survey of Current Practices in Overhead Accounting and Analysis," Proceeding, 1981 Western Regional Meeting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1).
- Clarke, E.H., Multipart Pricing of Public Goods: An Example, In Public Price for Public Products, edited by S. Mushkin, (Washington: Urban Inst. 1972).
- _____, "Multi Pricing of Public Goods," Public Choices (Fall 1971), pp.17-33.
- Eckel, L.G., "Arbitrary and Incurable Allocation,"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6), pp.17-33.
- Fremgen, J.M. and S. Lao, The Allocation of Corporate Indirect Costs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1981).
- Groves, T. "Incentives in Teams," Econometrica (July 1973), pp.617-33.
- Groves T. and M. Loeb, "Incentives and Public Inputs," Journal of Public Economy (August 1975), pp.211-26.
- _____, "Incentives in a Divisionalized Firm," Management Science (March 1979), pp.221-30.
- Harley, R.V., "Decision Making when Joint Products are Involved,"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1), pp.741-55

- Horngren, C.T.,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5th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1982).
- Jensen, D.L., "A Class of Mutually Satisfactory Allocation,"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7), pp.842-56.
- Kaplan, R.S. and G. Thompson, "Overhead Allocation Via Mathematical Programming Models," Accounting Review (April 1971), pp.352-64.
- Kaplan, R.S. and U.P. Welam, "Overhead Allocation with Imperfect Markets and Nonlinear Technologies," Accounting Review (July 1974), pp.477-84.
- Mumy, Gene E., "A Superior Solution to Captain MacWhirr's Problems: An Illustration of Information Problem and Entitlement Struc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1), pp, 1039-43.
- Reece, L.S. and W.R. Cool, "Measuring Investment Cost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78), pp.28-46.
- Shapley, L.S., The Value of an N-Person Game,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Games, in H.W. Kuhn and A.W. Tucker, ed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 Thomas, A.L., The Allocation Problem,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9).
- _____, The Allocation Problem: Part Two,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9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74).
- Tideman T.N. and G. Tullock, "A New and Superior Process for Making Social Choi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6), pp.1145-59.
- Vancil, R., Decentralization: Managerial Ambiguity by Design (N.Y.: FinancialExecutiveResearch Foundation, 1979), p.235.
- Zimmerman, J.L., "The Cost and Benefits of Cost Allocations," Accounting Review (July 1979), pp.504-21.

附 錄

韓 國 經 營 學 會

定 款 431

編輯方針 435

「經營學研究」 투고요령 437

定

款

第一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韓國經營學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經營學과 이에 關聯되는 학문의 研究를 통하여 韓國經營學 發展에 寄與하며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經營學의 理論과 實務에 關聯된 研究
2. 會報, 會誌 및 研究書籍의 刊行
3. 研究發表會
4. 本會와 目的을 같이 하는 國內外 諸學會와의 提携
5. 前各號 以外에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4條(事業所) 本會의 事業所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二章 會 員

第5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로서 正會員과 特別會員을 둔다.

第6條(正會員의 資格) 正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 中 入會節次를 畢한 者로 한다.

1. 大學校 및 大學에서 經營學과 이에 關聯된 科目을 擔當하고 있는 博士過程以上인 者이거나 또는 經營學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公認된 研究所에서 經營學分野에 從事하는 者
3. 其他 理事會에서 이와 等당한 資格이 있다고 認定하는 者

第7條(特別會員) 特別會員은 常任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入會가 決定된 個人 또는 團體로 한다.

第8條(權利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 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1. 本會의 모든 會員은 總會에 出席하여 討議에 參與할 수 있고 研究發表會 등의 本會事業에 參與할 수 있다.
2. 正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진다.
3. 會員은 所定の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9條(資格喪失) 本會員은 다음의 경우에 會員資格을 喪失한다.

1. 會費를 2年 以上 未納하였을 경우
2.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거나 會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시키는 者로

理事會의 除名決議가 있는 경우

第三章 任 員

第10條 (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 3名

理事 50名 以內 監 事 2名

명예회장 약간명

第11條 (會長·副會長 및 監事)

1.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2. 副會長은 會長の 추천에 의하여 總會에서 選任한다.

3.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總會·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會務를 統轄한다.

4.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副會長中 年長者가 會長の 權限을 代行한다.

5.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第12條 (會長選舉) 會長은 공천위원회나

會員 30名 以上の 추천을 받은 者로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出된다.

1. 공천위원회는 現會長, 前會長, 前前會長 各 1名과 理事會에서 推薦된 4名으로 構成된다.

2. 會長은 공천위원회를 總會前에 召集하며 공천위원회는 차기 會長을 推薦한다.

3. 理事會에서 推薦되는 공천위원은 會報를 통하여 公告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4. 理事會推薦 공천위원은 每年마다 1/2을 改選하며 連任할 수 있다.

5. 會員은 推薦에 의한 경우는 總會 開催前에 事務局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13條 (理事·監事)

1. 理事는 會長團이 지명한다.

2. 理事는 會長·副會長을 補佐하고 理事會를 構成하여 會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한다.

3. 理事中에서 常任理事 5名을 두며 會長이 이를 委囑한다.

4. 監事는 會의 事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14條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2. 補闕로 選任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四章 機 關

第15條 (總會)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2. 定期總會는 每年 2月에 開催되며, 臨時總會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2) 常任理事會의 議決이 있을 때

3) 會員 5分の 1以上이 書面으로 開催事由를 명시하여 要請할 때

第16條 (議決事項)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
2. 決算 및 事業報告의 承認
3. 任員의 選任 및 解任
4. 會員의 權利·義務에 대한 規定
5. 會長 및 理事會가 附議한 事項에 대한 議決
6. 其他 重要事項

第17條 (常任理事會) 常任理事會는 會長·副會長 및 常任理事로 構成되며 必要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第18條 (協議와 議決事項) 常任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協議·議決한다.

1. 臨時總會의 召集
2. 特別會員 加入議
3. 本會運營 및 業務에 관한 諮問
4. 各 支部에 대한 보조금 支給決定
5. 其他 事項

第19條 (委員會)

1. 本會의 設立目的을 활발히 推進하고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의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 1) 本會 학술지인 “經營學 研究” 編輯 發行을 위한 編輯委員會
- 2) 本會의 기금을 증식하고 管理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 3) 本會의 發展을 위한 事業 計劃을 效率적으로 推進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2. 委員會의 委員長은 活動 結果를 常任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3. 編輯委員會와 기금관리위원회의

構成과 活動에 관하여는 本 定款 第21條에 依하여 별도로 制定된 規則에 依한다.

第20條 (理事會)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수시로 召集한다.

第21條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員의 除名議
2. 總會의 支出할 案件의 議
3.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4. 投資 등 기금관리에 관한 事項
5. 會員會費의 決定
6. 編輯委員會 構成과 規約의 承認, 變更
7. 기금관리위원회 構成과 規約의 承認, 變更
8.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9. 學會誌 “經營學 研究”의 編輯 政策의 重要한 變更事項
10. 其他 事項

第22條 (議決方法)

1. 總會의 議決은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2. 理事會 및 상임이사회의 議決은 재적인원 過半數 以上の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으로 議決한다.

第五章 事業

第23條 (學會誌發刊) 本會는 學會誌「經營學 研究」를 年2回 以上 發刊한다.

1. 發刊에 關한 決定 및 業務는 編

輯委員會에서 行한다.

- 2. 편집위원회 내규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制定·變更한다.

第24條 (研究發表會) 本會는 年3回 以上 研究發表會를 가진다. 研究發表에 關한 決定은 常任理事會에서 行한다.

第25條 (其他事業) 本會는 本會目的에 關聯되는 定期·不定期的 各種事業을 行하며 이에 關한 決定은 常任理事會 및 理事會에서 決定하며 다음의 事業을 行할 수 있다.

- 1. 不定期 研究發表會 開催
- 2. 기금관리와 關連된 投資事業
- 3. 산학협동강연회
- 4. 外國과의 研究交流事業

第六章 會計

第26條 (經費)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入會金·贊助金·其他의 收入으로써 이를 充當한다.

第27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일부터 翌年 2월까지로 한다.

第28條 (會費賦課徵收) 會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29條 (執行 및 結果報告)

- 1. 豫算 및 事業計劃의 執行權은 會長이 가진다.

- 2. 會長은 會計年度末에 一般會計 決算報告書와 기금관리 決算報告書를 作成하고 監事의 의견을 첨부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七章 事務局

第30條 (事務局)

- 1. 本會의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 2. 事務局에 事務局長과 職員을 둔다.
- 3.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任免한다.
- 4. 事務局長은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 5. 事務局의 規定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制定한다.

附 則

- ① 本 定款은 1970年 12月 6일부터 施行한다.
- ② 舊定款에 의하여 1970年 12月 5日以前에 加入한 會員은 그 資格을 그대로 認定한다.
- ③ 本 定款은 1983年2月26일부터 施行한다.
- ④ 本 定款은 1987年5月31일부터 施行한다.
- ⑤ 일부 變更된 本 定款은 1989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

「經營學研究」의 編輯方針

모든 學術論文誌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掲載되는 각 論文이 그 分野의 學術的 知識의 축적에 貢獻해야 한다는 점이다. 學術的 貢獻이란 (1) 그 分野의 새로운 問題點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解答을 제시하는 일, (2) 새로운 研究技法을 創案하여 既存 問題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일, (3) 한 分野의 發展過程에 대한 史的 考察, 그리고 (4) 과거에 表明되었던 主張들을 比較分析하여 새로운 討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등을 말한다. 한편, 知識은 立證되지 않은 主張에 의해서는 産出되지 않기 때문에 臆說로부터 論證을, 處勢로부터 合理的인 論說을, 些少한 것으로부터 本質을, 그리고 不完全한 技法으로부터 擁護할 수 있는 研究方法들을 區分하는 일이 學術誌가 해야 할 役割이다. 그 밖에 다른 學術誌와는 달리 學術誌는 會員들에게 폭넓은 學問討論에의 參與機會는 물론 그네들의 教育活動에 도움이 될 學術資料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임무를 지닌다.

위와 같은 諸事實을 염두에 두고 本 編輯委員會는 앞으로 學術誌를 다음과 같이 편집해 나갈 方針이다.

1. 投稿者는 原則的으로 韓國經營學會 會員에 限한다. 다만, 會員과 共同研究者와 초청된 기고자는 例外로 한다.
2. 研究論文은 다른 刊行物에 發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論文의 內容에 대한 責任은 집필자가 진다.
4. 論文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2 人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집필자에게 通報한다. (심사위원의 이름은 비공개로 한다.)
5. 이때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論文의 게재를 위하여 內容의 修正이나 補完을 집필자에게 要求할 수 있다.
6. 論文의 審査 및 게재결정의 基準은
 - ①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내용의 창의성·검증성 및 응용
 - ④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 ⑤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여부 등이다.
7. 紙面은 研究論文, 研究노트 및 通信欄으로 區分될 수 있다.

經營學의 諸 分野의 지식에 學問的으로 貢獻할 수 있는 論文은 研究論文欄에 會員

의 教育活動에 도움이 될 학습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研究物이나 기존 研究에 대한 비평이나 코멘트 등은 연구노트欄에 기재한다. 그러한 통신란은 會員들에게 學問討論에의 參與機會를 제공하는 자리로 이용한다.

8. 論文의 게재 우선순서는 편집위원회가 論文을 接受한 날이 빠른 순서를 原則으로 하고 편집위원회가 論文의 重要性和 獨創性を 감안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9. 「經營學研究」에 게재된 論文의 版權은 韓國經營學會가 所有된다.

「經營學研究」 投矯案內

「經營學研究」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原矯마감일을 두지 않기로 決定하였습니다.

會員께서는 언제든지 投矯하실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原矯가 接受된 후 바로 審査를 始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豫定된 發刊시기까지 審査와 修正·補完이 完了된 論文에 限하여 該當號에 掲載될 것입니다.

지금은 第19卷 第1號부터 掲載될 原矯를 모으고 있습니다. 投矯하시는 原矯를 다음 住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지 청 교수연구실

※ 우편 이용시 반드시 등기로 보내 주십시오.

「經營學研究」 투고 요령

1. 原稿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로 提出한다.
2. 原稿는 3부씩을 提出한다.
3. 原稿의 접수일은 原稿가 본 회에 到着한 날로 한다.
4. 原稿는 국문 또는 國漢文 혼용으로 한다.
5. 原稿는 논문초록과 圖表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원고는 워드 프로세싱 또는 타자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논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로 한다)
6. 原稿 제 1면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고 원고매수를 표시한다.
7. 原稿 제 2면부터 논문초록을 기재하고, 논문초록이 끝난 후 본문을 기재한다.
8. 章, 節의 표시는
 - I.
 - 1.1
 - 1.1.1
 - .
 - .
 - .과 같이 한다.
9. 學術用語는 될 수 있는 대로 國文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부서를 붙일 수 있다.
10. 모든 표 및 그림은 백지에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 (예 : 표 1.1, 그림 3.2)와 題目 또는 說明을 붙여야 한다.
11. 각주 (footnote)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꼭 必要的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12. 각주 (footnote)는 語句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원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原稿가 끝난 직후의 면부터 作成하고 워드프로세싱이나 타자를 한 경우에는 各面 下段에 作成할 수 있다.
13. 必要的인 경우 고딕체는 下線 (____)으로 이태리체는 點下線 (.....)으로 각각 表示한다.
14. 참고문헌은 그 全部를 著者名에 따라 國文은 가나다順으로, 英文은 A B C 順으로

번호를 붙여 本文이 끝난 뒤에 기재하고, 本文中 참고문헌이 引用된 部分에는 [] 속에 해당 참고문헌의 저자 및 년도를 표시한다.(예 : [Salop, 1979], [김수곤, 1978])

15. 참고문헌은 定期刊行物의 경우는 著者名, 年度, 論文題文, 刊行物名 (이태리체로 表示), 권 (Vol), 호 (No), 面 (page)의 順으로, 定期刊行物이 아닌 경우는 著者名, 圖書名 (이태리체로 表示), 出版回數 (2 판 이상), 卷 (2 권 이상), 出版社名, 出版地, 出版年度의 順으로 기재한다. 다만, 出版年度는 著者名의 바로 뒤에 () 속에 記入할 수 있다.

例)

1. Salop, S.C.(Spring 1979), "Monopolistic Competition with Outside Goods,"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No. 1, pp.141 ~ 156.
2. Davis, Gordon B., and Margrethe H.Olson, 1985,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Conceptual Foundations, Structure, and Development, 2nd ed., McGraw Hill, New York.
3. 김수곤, 1978, 「 임금과 노사관계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16. 投矯된 原矯는 반환하지 아니한다.